

2019년 WAS 및 Jennifer 유지보수 용역 계약조건

동국대학교 (이하 “갑”이라 함)와 계약업체 (이하 “을”이라 함)는 동국대학교 “WAS, Jennifer”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의 목적은 유지보수 대상품목에 대한 “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갑은 “을”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 따르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 유지보수 품목 】

본 계약 시행 이후 “을”의 사전 동의 없이 “갑”이 추가로 어떤 시스템을 유지보수대상 “품목”에 “을”과의 사전협의 없이 추가할 수 없다.

- Websphere & WPS 및 Jennifer
- 서울,경주캠퍼스 시스템(uDRIMS)
- 업무관리시스템
- e-Class 시스템
- 학사행정 모바일 시스템

제 3 조 【 유지보수 관리 세부내용 】

- WebSphere & WPS, Jennifer 유지정비 서비스(서울,경주캠퍼스)
- 전담 엔지니어 배정
- 월 1회 정기점검
- 장애발생시 지원
- 고객요청시 방문지원(정기점검 포함 월 3회까지)
- 수강신청 시 비상대기 지원(방문지원 회수 미포함)
- WebSphere & WPS 교육지원(고객요청시 년 2회)
- 포탈/SSO, 업무/성과 서버 Jennifer Evaluation Key 제공

제 4 조 【 계약금액/유지보수료 】

1. 유지보수료(계약금액)는 **낙찰금액**으로 하며 월간 금액은 **낙찰금액÷12**으로 한다.
2. 유지보수료는 본 계약의 계약대상품목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제반 경비 일체를 말한다.

제 5 조 【 계약기간 및 계약보증금 】

1. 계약기간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12개월(1년)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총계약금액의 10/100으로 한다.

제 6 조 【 유지보수로 청구 및 대금지급방법 】

1. “을”은 월 유지보수료를 매월 말 이전에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익월 말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2. 대금지급방법 :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는 각각 60%와 40%로 분담하여 지급하며, “을”은 각 캠퍼스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해야 함.
가. 서울캠퍼스(60%) :
나. 경주캠퍼스(40%) :
합계 (100%)
3. “을”은 당월 발생한 서비스지원 내역을 기록한 지원대장 및 유지보수점검대장을 해당 월 말일까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대금 청구 시 “을”이 유지보수 한 작업의 내용(유지보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제 7 조 【 유지보수 】

1. “을”의 유지보수 용역 수행시간은 통상근무시간으로 한다. 단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완료 때까지 계속 보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이 보수작업으로 통상근무시간 이외에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용역비를 “갑”에게 청구 할 수 없다.
3. “을”은 원만한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조직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4. “을”은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과 장애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기술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갑”이 정한 서식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을”은 대상시스템에 설치된 S/W의 정식 License를 사용하며, (운영체제(OS) 변경 포함) S/W의 Version Upgrade, Patch등을 수행한다.
6. “을”은 장애신고 및 복구완료까지의 과정, 원인 및 결과를 기록 관리한 후 “갑”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을”은 유지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갑”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단, 전쟁,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제외하며 이때는 “갑”이 유지보수 비용을 실비로 부담하기로 한다.
8. “갑”은 작업원과 배치인력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조건 없이 이에 응한다.
9. “을”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고객에 지원하여야 한다.
10. 작업원은 신속한 서비스지원과 예방점검을 위하여 서로 기술지원을 통하여 협업한다.

제 8 조 【 이전설치 】

1. 이전설치의 필요성이 발생되었을 경우 “갑”은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2. “을”은 “갑”의 이전설치(재배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품목의 기술적인 부문을 지원한다.

제 9 조 【 장애지원 】

1. “을”의 유지보수 시간은 365일 24시간 무휴로 한다.
2. “을”은 “갑” 으로부터 장애신고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또는 원격접속을 통하여 복구 작업을 착수한다.
3. 장애에 대한 복구 작업 착수시간부터 12시간 이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한다.
4. “을”은 대상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수집 및 분석하여 결과와 대응책을 ”갑“에게 보고한다.

제 10 조 【 과업수행지침 】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2.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갑”과 협의하여 조정, 보완하여야 한다.
4. “을”은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갑”의 기술지원 요구 시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 11 조 【 지체상금 】

1. “을”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정한 시간 이내에 보수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위의 지정시간 내에 보수작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는 “(월용역비/720)*지체시간*2”의 금액을 월용역비에서 공제한다.
2. 계약자는 보수작업 착수 시간부터 정한 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시켜야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장비 정상가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월용역비/720)*지체시간*2”의 금액을 월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제 12 조 【 유지보수 면책사항 】

“을”은 유지보수서비스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 계약사항 미 이행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장애

제 13 조 【 보안책임 】

1. “을”은 “갑”의 시스템 유지보수 직원의 신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보안교육 및 안전장치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을”은 유지보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제반자료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내용이나 진행상황 등 보안사항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초래된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을”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을”은 전산자료 및 기타 보안성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에게 “갑”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여 충실히 이행한다.

4. “을”은 2항,3항에서 요구된 제반사항을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될 수 있다.
5. “을” 유지보수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시 “갑”에게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6. “을”은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제 14 조 【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갑”과 “을”은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 15 조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1.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등에 대해 30일 이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또한 “을”의 업무를 양도할 경우 “갑”의 업무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양도하고 나머지 업무를 인수 받은 업체가 “을” 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제 16 조 【 기타 】

1.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